

第17回 鷄龍市議會

第1次 定例會

2005. 7. 5(火)

—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—

檢 討 報 告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金 泳 鎮

檢 討 報 告

□ 改定背景

- 2005. 4. 19字 조직개편에 따라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(2003. 12. 10 조례 제22호)를 市の 조직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
-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확대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.

□ 主要内容

-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중 당연직 위원(제2조제3항)
 - “실·과장” 을 “본청 실·과장, 직속기관장 및 당면사업추진 단장” 으로 개정코자 함.

□ 檢討意見

-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,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중 당연직 위원에 새로이 직속기관장과 당면사업추진단장을 추가하는 것이며,
-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